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97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7
2. 주요 조문별 검토	10
(1) 정의(안 제2조)	10
(2) 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안 제9조)	13
(3) 보안시스템의 개발 등(안 제13조)	17
(4) 국가기밀의 파기(안 제19조)	19
(5) 보안사고의 조사(안 제24조)	21
(6) 벌칙(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23
※ 참고자료	29
1.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입법례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호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0.
3. 회부연월일 : 2025. 6. 11.

II.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 다.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 바.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사.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그 죄를 실행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4조¹⁾에서는 “국가 기밀”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²⁾한 것으로써 동 규정 제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 6.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안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비밀”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정의³⁾하고, 이 밖에 동 규정은 비밀보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신원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기밀⁴⁾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 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행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국가기밀 관리·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기관 전반이 비밀 보호·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3)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4) 제정안 제2조제1호의 “국가기밀”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뜻함.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소관의 「군사기밀 보호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또는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⁵⁾ 등을 고려할 때 국가기밀의 보호·관리 체계를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현행 「보안업무규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의 국가기밀은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⁶⁾ 제정안과 같이 국가기밀을 정의하더라도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기밀’과 자재·시설·지역·인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⁷⁾

제정안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안시설·국가

5) <참고자료 1>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입법례

6)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참고로, 군(軍)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舊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정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2025.)

보호장비의 보호, 보안측정, 신원조사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비밀기록물의 생산과 이관, 생산현황 통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⁸⁾은, 제정안은 현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 보호·관리 체계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밀의 위법한 탐지·수집 및 누설행위 등 국가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국가기밀 지정·취급 관련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무화 등 국가기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비밀로 지정된 국가기밀⁹⁾ 외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자재·시설·지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가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재·시설·지역 등을 포함한 국가기밀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임.

8) 국가정보원,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한 국가정보원 의견」, 2025. 7

9) 제정안은 제2조에서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6개의 장, 33개의 본칙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은 제정안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 등(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은 국가기밀의 구분, 지정원칙, 지정 및 취급, 국가기밀의 지정권자,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등급 표시 등 국가기밀의 지정·표시·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는 국가기밀 보호·관리의 원칙, 전자적 관리 등 필요한 조치, 재지정과 이관 등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제4장 국가기밀의 해제와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국가기밀의 해제, 공개, 그리고 제공 및 설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국가기밀 관리기관(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은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역할, 국가기밀 해제·공개를 심의하기 위한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장 벌칙(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은 국가기밀의 누설, 탐지·수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부칙 규정은 생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본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 등	제4조 국가기밀의 구분 제5조 국가기밀의 지정원칙 제6조 국가기밀의 지정 및 취급 제7조 국가기밀 지정권자 제8조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제9조 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 제10조 국가기밀 등급 표시 등
	제3장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	제11조 국가기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제12조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제13조 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제14조 국가기밀 보호조치 제15조 국가기밀의 열람 제16조 국가기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제17조 국가기밀의 재지정 등 제18조 국가기밀의 이관 등 제19조 국가기밀의 파기 등 제20조 국가기밀의 습득·분실 등 신고 제21조 국가기밀관리기록부 제22조 국가기밀 소유 현황 통보 제23조 국회 정보위원회에의 연차보고 제24조 보안사고 조사
	제4장 국가기밀의 해제와 공개	제25조 국가기밀의 해제 제26조 국가기밀의 공개 제27조 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

	제5장 국가기밀 관리기관	제28조 국가정보원 제29조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 제30조 국가기밀 관리기관의 협조 등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가중처벌 제33조 형의 감면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2조 국가기밀 지정 관련 경과조치 제3조 국가기밀 취급 인가자 관련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 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가기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1호는 “국가기밀”을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 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¹⁰⁾에서 국가 기밀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10)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 6. (생략)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제정안은 국가 기밀의 구성 요건을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국가이익에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국가기밀에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기밀’과 자재·시설·지역·인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정안과 「국가정보원법」에서의 국가기밀의 범위 >

구 분		비밀로 지정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서이거나, 비밀로 지정하기 어려운 자재·시설·지역 등
제정안	안전보장	○	×
	국가이익	○	×
「국가정보원법」	안전보장	○	○
	국가이익	×	×

※ 자료: 직접 작성

또한, 제정안 제2조제2호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밀의 생산·보호·관리와 관계되는 각급 기관을 누락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¹¹⁾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¹²⁾와 같은 개별 법률상 독립기관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 적용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¹³⁾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 2. (생략)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판시한 바 있음(2009헌라6 결정, 2020헌마264 결정).

(2) 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안 제9조)

제9조(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소관 국가기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II급 비밀 이하의 국가기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가 국가기밀로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기밀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국가기밀 취급 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10조¹⁴⁾는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하여금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이나 기업체 소속 임직원(이하 “개인 등”이라고 함)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¹⁵⁾에서 비밀취급인가

14) 「보안업무규정」 제1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② ~ ⑥ (생략)

1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영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비밀 책자·지도 등을 제작하는 민간 인쇄업체, 국가보안시설 특수경비업체, 외교·국방 분야 연구원·민간 자문위원·방위 산업체 등은 국가기밀 취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임.

제정안은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¹⁶⁾로 하여금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등에게 소관 국가기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II급 비밀 이하의 국가기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등이 생산한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가 국가기밀로 지정하며, 개인등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기밀을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밀의 구성 요건을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국가이익에까지 확장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이나 지식 등 에까지 국가기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보

16)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7조(국가기밀 지정권자) ① 등급별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가기밀 등급에 대한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국가기밀을 취급하거나 접근하는 소속 직원에게 국가기밀의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유하고 있는 국가기밀 성격의 문서를 국가기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요컨대, 현행 규정은 민간에 비밀취급‘인가’권 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민간에 비밀취급‘인가’권과 ‘지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인등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이 비밀 지정권까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등으로 하여금 개인등이 비밀을 적절하게 생산·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비밀과 관련된 과정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이관 등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나,¹⁷⁾ 현행 규정은 개인등에게 비밀 취급 권한만을 부과하고 있어 보안대책의 범위가 좁고 적용되는 규정 역시 비밀의 보관기준, 보관용기, 보관책임자 등¹⁸⁾으로 비교적 넓지 않은 한편,

17)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18)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I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II급비밀 및 III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비밀과 III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한이 생산·지정 등 관리 전반에 확대되는 경우 전 과정에 걸쳐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¹⁹⁾ 요구되는 관심과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제정안은 개인등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생산·지정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강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34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5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II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 전(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할 것

19)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1조(국가기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난·화재·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국가기밀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지정·취급·유통 및 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국가기밀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관리에 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2조(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① 국가기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안시스템을 작동·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3) 보안시스템의 개발 등(안 제13조)

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① 국가기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안시스템을 작동·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보안시스템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한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제4호는 “암호자재”를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 급, II 급 및 III 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규정 제7조²⁰⁾에서는 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 「보안업무규정」 제7조(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 ①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제작 등 암호자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3조는 국가기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보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고 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보안시스템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밀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현재 국가정보원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암호자재 개발 위탁 등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²¹⁾

보안시스템의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위탁하기 위한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국가정보원,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한 국가정보원 의견」, 2025. 7

(4) 국가기밀의 파기(안 제19조)

제19조(국가기밀의 파기 등)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등급 이하의 국가기밀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기밀을 파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상시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의 파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5조(재분류 등)²²⁾에서 ① 전시·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②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²³⁾에서 관계 기관의 장으로

22) 「보안업무규정」 제15조(재분류 등) 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1. 전시·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23) 「보안업무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하여금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게 주지(周知)시키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비밀의 파기에 대한 사항을 별개의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현행 「보안업무규정」에서는 불분명했던 파기 주체를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비상사태 시 비밀의 파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2항24)에서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사태 시 비밀 기록물의 원본에 대한 파기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비상사태시 국가기밀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지정권자가 아닌 취급인가권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기의 주체 역시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가 아닌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로 수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보안사고의 조사(안 제24조)

제24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 또는 출입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8조(보안사고 조사)와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²⁵⁾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①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②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③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5) 「보안업무규정」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정안은 현행 「보안업무규정」 중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보안사고 조사의 요건 중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가 제외되어 있어, 이들 요건을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벌 칙(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제31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국가기밀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복사하는 등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한 자
 3. 제27조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국가기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 ⑤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국가기밀 제출 요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⑦ 과실로 제1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가중처벌)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3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소속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등에 자수하거나 그 죄를 지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현행 「군형법」 26), 「군사기밀 보호법」 27) 등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26)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누설 등 국가안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는 「형법」 28) 제98조(간첩)에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세분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밀의 누설, 탐지·수집, 목적 외 용도 사용, 원형의 재현, 손괴·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분실 등 신고의 불이행, 습득신고 불이행, 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의 처벌규정과 비교할 때 ‘비인가자의 국가 기밀 점유’, ‘보호조치 비이행’, ‘보호구역 침입’ 등 일부 구성요건이 제외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누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경우’ 등에서의 형량에 차이가 있는데,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8)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정안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없이 침입하는 경우²⁹⁾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맞추어 형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상 처벌규정의 비교 >

구성요건	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누설	제31조제1항 7년 이상의 징역	제12조(누설) 제1항 (탐지, 수집 후 누설) 1년 이상 유기징역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탐지, 수집	제3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제11조(탐지·수집) 10년 이하 징역
열람 또는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국가기밀 공개 또는 누설	제31조제3항제1호·제3호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2항 7년 이하 징역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 후 누설	-	제12조(누설) 제2항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누설	제31조제7항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밀의 원형 재현	제31조제3항제2호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은닉·효용 저해	제31조제4항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2항 1년 이상 유기징역

29)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4조(국가기밀 보호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방지 또는 국가기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하여 시설·지역·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보안상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과 대상·방법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실·도난 미신고	제31조제5항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제1항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밀 습득 미신고	제31조제6항제1호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가기밀 제출 요구 불이행	제31조제6항제2호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제2항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항 2년 이하 징역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	제11조의(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보호구역 침입	-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항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보호구역 침입 후 군사기밀 절취, 손괴·은닉 등	-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

그리고, 제정안은 가중처벌의 사유로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국가 기밀과 관련된 국가안보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하여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제정안의 벌칙 규정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제정안은 누설·유출 등에 대한 벌칙규정만 다루고 있어 시설·암호자재·신원조사 등 국가기밀에 관련된 요소 전반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안 제33조(형의 감면) 단서는 이 법에 규정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벌칙에서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자수’ 개념이 부적절하여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³⁰⁾

문 의 처
02)6788-5614

30) 국가정보원,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한 국가정보원 의견」, 2025. 7

※ 참고자료

1.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입법례³¹⁾

□ 미 국

○ 「방첩법」(The Espionage Act of June 15, 1917)

- 국방에 관한 정보(문서·암호서·신호서·사진·지도 등)를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정보가 미국에 해를 입히거나,
-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의도 또는 이유를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기밀정보’는 법령 또는 행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단 공개되지 않으며, 특정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되고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표현된 정보 또는 자료라고 정의
- 중앙정보국·국가정보국 작전파일 및 국가지리정보국·국가정찰국·국가안보국 운영파일의 보호 관련 규정, 기밀 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방안, 미국 비밀 요원의 신원 보호 등을 규정

○ 「행정명령 13526호」(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초국가적 테러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 정보를 분류, 보호 및 기밀 해제하는 통일된 시스템을 규정
- 기밀 정보는 동일·유사 정보의 무단 공개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31) 국가정보원,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한 국가정보원 의견」, 2025. 7

않으며, 특히 외국 정부 정보의 무단 공개는 국가안보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간주

- 기밀 분류 대상 정보(8개) 기준에 따라 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로 분류, 비밀 분류 권한 및 위임, 비밀의 보호, 비밀의 해제 등을 규정

○ 「행정명령 13556호」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른 국가기밀 이외 법률, 규정 및 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보호·배포 통제가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명령

□ 영 국

○ 「국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of 1989)

- 보안·정보기관 활동, 국방·외교관계 및 범죄수사 등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을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무단 공개를 금지토록 규정
-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정부와의 계약 당사자가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국가기밀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약식 판결(보호의무 미이행)로 3개월 이하 징역·벌금형 가능

□ 독 일

○ 「형법」

- 국가기밀³²⁾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기밀의 누설·공개·전달 및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

32)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방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물건 또는 지식

○ 「연방 보안 점검 및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법률」

- 독일 ‘국가기밀 보호’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연방당국과 기타 공공기관은 이 법과 연계하여 관련 행정규정을 마련·시행 중
- 기밀 정보를 보호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일급 비밀, 비밀, 기밀)으로 분류하고, 기밀 정보 취급 또는 중요시설 근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 명시

□ 일 본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센가쿠열도 영토분쟁, 북 미사일 도발 등 계기로 국가안보 관련 기밀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일 군사기밀 공유, 영일 비밀보호 협정 발효(2014. 1.)에 맞춰 입법, 2014. 12.부터 시행 중인 법률임
- 국가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방·외교 및 특정 유해활동(스파이활동 등)·테러방지 사항을 ‘특정비밀’로 분류
-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적성평가를 실시, 비밀유출 우려가 있는 부적격자를 배제토록 의무화
- 고의에 의한 비밀누설 및 비밀 불법취득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미수·공모·교사·선동도 처벌)

○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비밀의 범주를 ‘경제안보’까지 확대하여 우방국과의 기술동맹·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입법 추진, 2024. 5. rhdvhwja시행

- Five Eyes 가입, 우방국과의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위해 선진국 기밀보호 체계와 수준을 맞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논의 출발
- 누설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민감 경제정보를 ‘중요경제안보정보’로 지정, 경제기반 취약성·보호계획·관련연구 등을 비밀로 관리
- 해당 정보 접근자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고, 기밀유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구금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형 부과

□ 중 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 총칙, 국가비밀의 범위와 등급, 비밀보호 제도,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 총 6장 65개조문으로 구성
- 국가의 안전 및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범위 사람에게만 인지되는 사항을 ‘국가비밀’로 분류
- 또한 국가비밀 보호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위법소득도 몰수하는 것을 명시한 점은 다른 국가와 차별

